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의사 수를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당 적정건수 배정(월 4~5회 → 월 8회 이상) 심사를 위해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현행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적정건수를 심사함으로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9조제1항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예산증액사항 검토 중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5명”을 “4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진폐심사의사)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u>15명</u>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9조(진폐심사의사) ① ----- ----- <u>45명</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8